

CEO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친애하는 한올바이오파마(주) 임직원 여러분

우리 한올바이오파마는 1973년 설립하여 인간생명의 존중이라는 최선의 가치를 위해 정직하고 건강한 Health Care 기업으로서 고객, 주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2007년 윤리적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및 삭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건강보험법에 추가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쌍벌제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척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험급여 정지 및 삭제조치는 제약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COC(윤리적 행동규범) 경영을 기초로 대내적인 준법정책을 수립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께서는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2014 ISO 19600에 채택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내부경영시스템을 공정거래 질서에 맞도록 지속 운영·개선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는 체계화 된 시스템으로써 당사는 준법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임직원의 준법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법 준수를 위해 해야 할 일(Do)과 하지 말아야 할 일(Do not)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상 징계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니, 아래의 행동지침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정위가 승인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기관의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관계자(경쟁사고객 포함)에게 부당하게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거래관행이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

한올바이오파마(주) 대표이사 박승국, 윤재춘